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같은 날 생산한 같은 비료에 대하여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.

나.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과한다.

다.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
- 3)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중 구리·아연 성분이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경우
- 4)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,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- 1) 최근 1년간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
- 2)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(구리·아연은 제외한다) 최대함유량을 2회 이상 초과한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 금액					
	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4개월	영업정지 5개월	영업정지 6개월
가. 법 제14조제1항에	법 제21조	400	800	1,200	1,600	2,000	2,000

따라 표시된 보증성 분량에 미치지 못하 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·진열·판매· 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	제1항						
나.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 는 비료를 양도·보 관·진열·판매·유 통하거나 공급한 경 우	법 제21조 제1항						
1)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		500	1,000	1,500	2,000	2,000	2,000
2) 비료의 용기나 포 장의 표시사항이 훼손 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		400	800	1,200	1,600	2,000	2,000
3) 공정규격에 정해 진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을 초과한 비료		1,000	1,500	2,000	2,000	2,000	2,000
4) 비료의 용기나 포 장에 그 효과에 대 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 료		400	800	1,200	1,600	2,000	2,000
5) 공정규격에서 정하 는 원료 외의 물질 을 사용하여 제조 한 비료		500	1,000	1,500	2,000	2,000	2,000
6) 비료생산업자 또 는 비료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		500	1,000	1,500	2,000	2,000	2,000

거나 수입한 비료							
7)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법 제 12조에 따라 신고 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 조한 비료		500	1,000	1,500	2,000	2,000	2,000